

의안번호	2113564
의 피 인	구자근의원
회 답 일	2021.10.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기금의 사용(안 제21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사업의 공제부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음(제1항제25호 신설)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III.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공제부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소상공인공제사업의 공제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1년 9월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의 신규가입 건수는 23만 건이고, 재적 가입 건수는 152만건임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개요는 [참고자료 1] 참조

[표 1] 연도별 노란우산 가입현황

(단위 : 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신규가입 건수	195,817	251,266	271,783	237,167	274,094	234,260
재적가입 건수	739,882	922,482	1,097,018	1,224,621	1,384,038	1,521,542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현재 정부 차원에서의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부금 지원제도는 없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려금 지원사업(희망장려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에 차이가 있음
 - 보다 자세한 지방자치단체 장려금 지원사업(희망장려금)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표 2] 지방자치단체 장려금 지원사업 현황(광역지자체 기준)

지자체(광역)	지원대상 (연매출 기준)	지원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	비고
광주광역시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 내 시·군, 전북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특별시	2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세종, 제주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전광역시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강원 내 시·군	2억원 이하	5만원	60만원	

자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제부금 지원 대상자 수, 평균지원액, 지원한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 추가재정소요 = 지원 대상자 수×지원액×지원기간
- 그러나,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부금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에 관해 사전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 지원대상자 수는 가입자의 사업체가 속한 업종, 가입자의 매출액 등 기준 설정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월평균 지원액 및 지원기간 등에 대해서도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참고자료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개요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제도개요

-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폐업·노령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운영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주요내용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포함)
 - *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 (공제사유) 폐업, 사망, 노령(60세 이상),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
 - * 노령공제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시 지급
- (지급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기준이율('21.4분기) : 2.2%. 단, 폐업·사망시 2.5%(기준이율+0.3%)
- (기타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예금자보호법은 미적용

□ 가입현황(2018~)

(단위 : 명, 억원)

구 분		가입(A)	해약(B)	공제금지급(C)	재적(A-B-C)
2018	공제가입자	1,404,254	71,084	236,152	1,097,018
	공제부금	114,818	3,449	16,060	95,309
2019	공제가입자	1,641,421	103,237	313,563	1,224,621
	공제부금	148,076	5,288	22,632	120,156
2020	공제가입자	1,915,515	133,455	398,022	1,384,038
	공제부금	185,933	7,093	30,532	148,308
2021.9	공제가입자	2,149,775	155,273	472,960	1,521,542
	공제부금	218,294	8,304	38,125	171,865

[참고자료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금(희망장려금) 현황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희망장려금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정만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장려금

지자체	시행 시기	지원대상 (연매출)	지원금액 (월)	지원 기간	2021년 예산액
서울	'16.3	2억원	20,000	1년	8,809백만원
부산	'19.1	3억원	20,000	1년	1,500백만원
대구	'19.4	3억원	20,000	1년	1,235백만원
인천	'19.1	3억원	20,000	1년	3,000백만원
광주	'18.10	2억원	10,000	1년	400백만원
대전	'19.1	3억원	30,000	1년	1,300백만원
울산	'18.3	3억원	10,000	1년	200백만원
세종	'19.5	3억원	20,000	1년	240백만원
경기	'19.1	3억원	10,000	1년	4,400백만원
충남	'19.4	3억원	10,000	1년	600백만원
전남	'19.7	3억원	20,000	1년	414백만원
경북	'20.1	3억원	20,000	1년	1,500백만원
경남	'18.7	3억원	20,000	1년	2,172백만원
제주	'18.1	3억원	20,000	1년	600백만원
강원(각 시군)	'19.7	2억원	50,000	'19.7~ '21.12	18,783백만원
충북(각 시군)	'19.7	3억원	10,000	1년	323백만원
전북(각 시군)	'19.1	3억원	10,000	1년	799백만원
전남 광양	'19.4	2억원	10,000	1년	27백만원
충남 당진	'19.4	3억원	20,000	1년	180백만원
인천 부평	'20.1	3억원	10,000	1년	126백만원
인천 계양	'21.1	3억원	10,000	1년	70백만원
전남 곡성	'20.1	3억원	10,000	1년	21백만원
서울영등포	'21.3	2억원	10,000	1년	100백만원
인천 중구	'21.7	3억원	20,000	1년	42백만원
충남 보령	'21.7	3억원	20,000	1년	20백만원
전남 여수	'21.5	3억원	10,000	1년	60백만원
전남 영광	'21.5	4억원	10,000	2년	24백만원
계					46,946백만원

주1) 지자체와 협약사항 변경에 따라, 지원조건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주2) 지자체별 예산액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취합된 결과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장	이현경
추계세제분석관	김계남
연락처	02-6788-4650
	godself@assembly.go.kr
